

「디자인 개발지원」 참여기업 3차 모집

신청가능 소재지(양주, 여주)

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디자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제품 완성도 향상과 중소기업의 고유브랜드 육성으로 기업 인지도 상승효과 및 매출향상에 기여 하고자 “디자인 개발지원”에 참여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2년 8월 17일

경기도지사 ·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

1

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디자인 진단에서부터 디자인개발까지 지원하여 신제품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촉진을 통한 매출 증대

□ 지원내용

- **[디자인개발]** 디자인 전문회사(대학)를 활용하여 제품, 시각/포장 디자인 개발지원

□ 지원대상

- **[디자인개발]** 신청일 기준 2개 참여시군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
※ 제품디자인의 경우 공장등록기업에 한함

※ **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** (건축물대장 제출)

- "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근린생활 시설 중 “제조업소(시설)” 인 기업

※ **아래 시설 입주기업도 신청 가능** (입주기업 확인서,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)
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(신청서식 내 리스트內 확인가능)
- 경기창업벤처센터 내 입주기업
- 기타 제조시설 확인자료(직접생산확인증 등) 제출이 가능한 경우

▶ 3차 참여가능 2개 시군에 소재한 중소기업

- 남부권 : 여주(1개사)
- 북부권 : 양주(3개사)
-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참여가능하며, 공장소재지가 미참여시군인 경우에 한하여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
- 공장미등록기업은 본사소재지로 신청가능(시각·포장디자인 분야에 한함)
※ 시각포장디자인 신청기업중 공장등록증 보유기업일 경우 가점부여 (공장등록증 제출기업에 한함)
- 상기 지역이외 소재기업은 신청불가 (2023년 2월 모집 예정)

□ 주관기관 [디자인수행업체]

○ 1차 서류평가 통과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

※ 과업 및 최종결과물, 비용 등 충분한 협의 후 선정, **최종선정 이후 주관기관 변경 불가**

○ 주관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등록된 전국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 및 관련학과가 설치된 경기도 소재 대학(교)

- 디자인전문회사는 한국디자인진흥원 신고필증상 전문분야가 지원신청분야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경기도 소재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가점우대
- 전년도 수행평가 결과 「경기도 우수디자인전문기관」은 가점우대하며 www.gds.or.kr 확인 가능

□ 신청제한 기업

- 세금채납액이 있거나 완전자본잠식(2개년 이상), 기업 신용도 조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
- 정부출연금 및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과제 또는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
- 전년도 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 지원받은 경우
- 당해연도 도내 타 유사사업에 참여하는 기업
- 접수된 과제가 이미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
- 기타 동 사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지원제외 대상에 속하는 경우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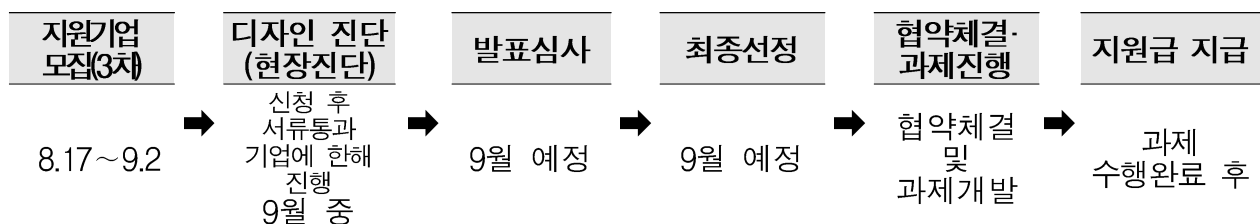
지원분야

□ 지원분야

구 분		내 용	지원한도액	기업부담
디자인 개발	디자인진단	전문 디자인닥터 현장방문 「1:1현장애로해결」	15만원이내	없음
	개발	디자인 전문회사(대학)를 활용하여 제품, 시각·포장 디자인개발지원	제품디자인 (1,400만원) 시각·포장디자인 (700만원)	30%

※ 디자인진단 : 지원적격 및 서류평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진단 실시
- 디자인 진단 지원비용은 참여기업별 연 1회에 한해 지급

□ 지원절차



※ 상기일정은 지원기업 규모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.

- ▶ 모집기간 신청접수 후 1차 서류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디자인진단(현장진단) 실시
- ▶ 디자인진단 수행 후 최종 디자인개발 지원기업 선정을 위해 2차 선정평가위원회(발표심사) 개최
 - 개최일정 : 9월 중 예정, 비대면 심사

□ 유의사항

- 명확한 지원분야 및 소요비용 확정 (제품, 시각/포장 중 한 개 선택)
 -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70%에서 지원가능
(B사 제품디자인개발 용역금액이 20백만원(VAT제외) 일 때 14백만원 지원)
 -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및 예산상황에 따라 최종 디자인분야 및 금액이 **일부조정 될 수 있음**
 - 시·군별 예산 사정에 따라, 일부 시·군은 지원한도액까지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
 - 2개 시군 중 여주시의 경우, 시각포장분야 지원금인 7백만원 이내에서 지원가능
- **12/10일까지 종료될 수 있는 과업에 한해 신청가능(시각/포장, 제품분야 모두 적용)**
 - **사업기간 연장 불가**
- 총개발비용에서 지원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업부담
- 지원결정금액은 부가가치세(VAT)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(VAT)는 기업부담
- 과업 범위
 - 제품디자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1:1 Mock-up 개발 필수
; Scale(축소) Mock-up 개발 시 참여기업과 주관기관 협의 및 심사자료에 **必** 명시
 - 포장디자인의 경우 제작시방서, 패키지 샘플 제작 필수
 - 시각디자인의 경우, 매뉴얼북 제작 필수
- 기타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별첨. 「디자인개발지원 관리지침」 참고

3 주관기관 확인방법

- 1차 서류평가 통과 기업에 한해 신청기업이 주관기관을 선정
 - 한국디자인진흥원 등록 디자인 전문회사 조회 (designfirm.kidp.or.kr)
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신청기업에 별도로 주관기관(디자인전문회사)을 추천하지 않음

4 신청방법

○ [접수기간] 2022. 8. 17.(수) ~ 2022. 9. 2(금) 15시 까지

- ※ 마감일에 접속자 수가 많아 서버접속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청 드리며, 마감 시간 이후 접수분은 인정불가
- ※ 신청현황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

○ [신청방법] 이지비즈 (www.egbiz.or.kr) 온라인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

- ① 기업회원으로 가입/로그인
- ② (상단) 마이페이지 클릭 ⇒ 나의 서류함 클릭 ⇒ 하기 제출서류 보유 시 (하단) 등록하기 클릭
⇒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
※ 나의 서류함에 문서를 업로드하시면 향후 계속하여 편리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③ (상단 좌측)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⇒ ‘기술개발/사업화’ 카테 고리에서 “2022년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” 클릭 ⇒ (하단) 지원사업 신청하기 ⇒ 신청서 작성
- ④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

※ 신청서 및 제출자료 수정은 접수기간 마감전까지 마이페이지-나의참여사업-참여사업 진행현황-(하단)신청서 수정 클릭하여 수정가능

5 제출서류

- (필수) 디자인개발지원신청서(서식1),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), 공장등록증명원(제품디자인 개발 신청 시), 2021년 재무제표, 국세 납세증명서, 지방세 납세 증명서, 2021년 고용보험가입자 명부
※2021년 재무제표상 자본잠식(자본총액이 마이너스)인 경우 2020년 재무제표를 동시 첨부 요망
- (선택) 경기도유망중소기업, 벤처기업, 경기 일자리우수기업, 이노비즈, 수출유망중소기업, 사회적기업, 여성기업, 성과공유제 도입기업(www.benis.or.kr에서 발급), 면접수당 지급기업 “인증서”에 한함
산업재산권(특허, 디자인, 상표, 출원 제외) 및 해외규격인증, 신기술마크, 품질인증 등
※발급방법 등은 공고문 붙임의 「디자인개발지원」 제출서류 리스트 참조

6 문의처

- 사업내용 및 신청 방법 등 문의
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 디자인개발지원담당
(Tel. 031-259-6491~6492, 6498, 유선 차장)
- 이지비즈 홈페이지 관련 문의 [로그인 문제, 온라인 신청, 파일업로드 오류 등]
 -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산운영실 (Tel. 031-259-6299)

7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
[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]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.
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